



# 보도자료

“함께 일하는 나라, 행복한 국민”

▶ 보도일시: 2013.9.13(금) 석간  
<인터넷 9.13(금) 11:00 이후>  
▶ 총 5쪽

❖ 제조산재예방과 과 장 김 규 석  
서기관 오 기 환  
☎ 02-6922-0932  
산재예방정책과 사무관 강 성 훈  
☎ 02-6922-0914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(알림마당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## 고용부, 대형사고 선제적 예방에 발 벗고 나서

- 화재·폭발·붕괴 등 고위험 사업장 1만개소, 감독관 전담관리 실시
- 법 위반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작업중지, 명단 공표, CEO 벌칙성 교육 등 강력 제재
-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확대 등 자율안전관리체계 강화
-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 규모 및 요율의 할증 범위 확대 추진

□ 고용노동부는 9.13(금)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업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「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」을 발표하였다.

○ 최근 대규모공장, 대형 건설현장에서조차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화학물질 폭발·누출사고, 건설공사장 수몰·붕괴 사고 등 사망을 동반한 대형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

- 노·사·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마련, 9.13 중앙안전관리위원회(위원장: 국무총리)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.

\* 현장방문(포스코, 중랑물재생센터 등), 간담회·토론회 4회 개최 등

① 이번 대책은 고위험사업장 집중관리 등 선제적 예방관리감독 강화, 법위반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중대재해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었으며

② 자율예방 사업 참여중 활동 미흡시 즉시 승인 취소 등 스스로 책임지는 사업장 자율 예방활동 활성화,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.

□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발표한 「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 ① 중대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

○ (전담감독관 집중관리) 화재·폭발·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취약사업장(1만개소)\*에 대해서는 전담감독관이 안전공단,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합동으로 위험작업 단계별로 적시에 필요한 기술지원,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지도하게 된다.

\* 화재·폭발·붕괴사고 등 고위험 사업장(집중관리 3천개소), 크레인·지게차·용해로 등 사망사고 유발 위험기계·설비 다수 보유 사업장(관심관리 7천개소)

\* '13.3월말부터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(1,186개)에 대해 시범적으로 밀착 관리한 결과, 이들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43% 감소하는 효과 발생

○ (소규모사업장 지원강화) 재정적·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'재정지원'을 확대\*하고, 산재 취약 사업장 50만 개소\*\*에 대해 맞춤형 재해예방사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.

\* 산업단지 추가 '14년 예산: 100억원 증액

\*\* '14년 총 509,050개소: 기술지도(13만여개소), 안전보건컨텐츠 배포(37만개소)

○ (사망재해 다발작업 특별관리) 건설·제조업의 사망사고 다발 10대 작업\*에 대해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, 지도·감독 등을 종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

- \* (건설업) 거푸집동바리 설치·해체작업, 지붕의 설치·해체작업, 동력기계를 사용한 적재작업, 철골의 설치·해체작업 등 (제조업) 지게차 운전작업, 기계기구·설비의 청소·세척, 기계설비 연결·설치 작업, 용접작업 등
- \* '13.2월부터 지게차·천장크레인 사용작업 수행 사업장에 매뉴얼을 보급, 중점 지도한 결과 사망재해가 40% 이상 감소하는 효과 발생
- 재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신규채용 근로자 및 장년·외국인 근로자에 특화된 안전보건자료를 개발·보급 등 특별관리 할 예정이다.
- \* '12년 재해 근로자의 66.1%가 입사 1년 이내 근로자

## ②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

- (엄정한 행·사법조치 및 사회·경제적 제재 강화) 법위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**작업중지명령 확행**과 함께 이를 사업장 외벽에 게시토록 하고, 최근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개선토록 하는 **전면작업중지 명령**을 내린다는 방침이며
  - \* 작업중지기간: ○○산업 3개월(종료), ○○제철 1개월(종료), ○○ENG 1.5개월(현재는 일부 해제), ○○건설 2개월(진행 중)
  - \*\* 현행 A4용지 크기의 작업중지명령서를 사업장 벽(게시판)의 크기에 맞춰 다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토록 조치
- **CEO에 대한 벌칙성 교육\***, 산재예방 불량사업장 명단 공표\*\*, 법정 과태료의 최고금액 즉시 부과, 안전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명령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.
  - \* 중대재해발생 시 CEO 등 임원에 대해 안전교육 의무화
  - \*\* 현재 매년 1회 관보 등에 게재 → 공표대상별로 반기 또는 분기 단위로 유관기관 홈페이지, 전광판, 언론 등에 게재
- 한편,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\* 적용사업장 규모(현재 20인 이상)를 확대하고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한 요율범위(현재 최대 ±50%)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.
  - \* 개별실적요율: 사업장의 산재 보험료 납부액과 산업재해로 지급된 보험급여액 비율에 따라 ±20%~±50% 범위내에서 산재보험료율을 할증/할인하는 제도

- (원청의 책임강화)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할 위험장소\*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할 업종확대\*\* 등 **도급인의 협력업체 산재예방 책임을 확대**하며
  - \* (현행)화재·폭발 우려 특정장소, 위험물질 제조·취급장소 등 16개 작업장소 → (개정)화학설비의 정비·보수 작업장소, 방사선 노출작업 추가
  - \*\* (현행)제조업, 건설업 → (개정)전업종(공공행정 등 일부 업종 제외)
- 하도급업체 재해율을 원청업체 재해율에 합산 관리하는 등 원청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, 법 위반에 대한 원청의 처벌규정도 강화할 계획이다.
  - \* (현행)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→ (개정)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
## ③ 책임지는 자율 예방 활성화

- (자율 재해예방활동 내실화) 사업주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하는 **위험성평가제도**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원\*하고
  - \* 위험성평가 참여 후 산재예방활동 우수사업장은 산재보험요율 할인 추진
- 건설업의 자율예방사업은 유지하되, 참여(승인)업체를 엄선하고 중대재해발생시 즉시 승인취소 등 **사후관리를 강화**하여 자율 예방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.
  - \* 종전에는 자율예방사업 참여 승인 후 확인을 미 실시 했으나, 중대재해발생 또는 예방활동 미흡 시에는 즉시 승인 취소 등 사후관리 강화
- (근로자 참여 활성화) 「위험상황신고실(1588-3088)」을 운영하여 위험작업을 사전에 차단하고,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  - \* 신고자가 사진·동영상을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신고하면,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및 근로자를 대피시키도록 조치
- (사업장 안전관리시스템 강화)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규모 확대 및 선임방법 개선\*,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담당자 지정제도 신설 등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한다.

\*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,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 등은 안전관리자수(현행 최대 2명)를 증원토록 명령하고 위탁이 아닌 소속 근로자로 직접 선임토록 조치

#### ④ CEO부터 현장까지 안전수칙 지키기

○ **(기업의 안전수칙 준수문화 정착)** CEO부터 현장 관리감독자까지 각자의 사고예방 노력을 수시 확인하고 관리감독자가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·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.

\* CEO-장·차관·국장, 공장장-청(지청)장·과장, 관리감독자-감독관이 문자메시지, 전화 통화 등으로 확인·촉구, 안전수칙준수 분위기 유지

○ **(산업안전교육 실효성 제고)** 이론 위주의 안전보건교육을 탈피, Tool Box Meeting과 같은 **현장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인정**하는 등 실무형 **현장중심의 교육방식을 도입**할 계획이다.

\* 현재는 주로 교육기관을 통한 이론중심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

□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“이번 대책의 특징은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**선제적으로 집중관리**하고 **법 위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**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**엄정하게 처벌**하는 한편 **원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**하여 **대형재해를 사전에 예방**하는데 역점을 두었다”라고 말했다.